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3년 10월 6일

나. 제출자: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라. 상정일자: 2023년 10월 17일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나. 제안이유

-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사업 범위 확대에 따라 행정력 과다 소요로 사업의 직접 추진이 어려움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필요함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석면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함

다. 주요내용

○ 사무명 :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추진근거

1) 「지방자치법」 제117조

2)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4)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5)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2023. 1. 환경부)

○ 위탁기간 : 2024년 ~ 2025년 [2년간]

○ 사업내용

1)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2) 슬레이트 처리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무허가 제외)

○ 사업량 및 소요예산(2024년 기준) ※ 2025년 국비 확보에 따라 변동

1) 사업량 : 슬레이트 철거 232동(주택 200동, 비주택 32동), 지붕개량 19동

2) 소요예산 : 996,120천원 [균특 50%, 도비 15%, 시비 35%]

(단위 : 천원)

총 계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계	주택	비주택	
996,120	876,800	704,000	172,800	119,320

3) 위탁수수료 : 사업비의 8% 이내(최종 정산사업비에 따라 변동됨)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

- 1) 선정방법 :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 평가내용 : 사업 수행 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종합 심사
 - 3)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자료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 위탁사무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업무 전반
- 1)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 공개경쟁 입찰(구미시 및 인근 지역 업체 우선 선정)
 - 2) 슬레이트 면적 조사 실시(위탁기관, 철거업체, 건축소유주 3자 확인 조사)
 - 슬레이트 처리 현장 관리·감독 및 안전교육 실시
 - 사업 분석 및 사업비 정산, 결과 통보
- 성과평가 결과(재위탁) : 우수(82.7점)
-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 기 타 : 2023년 제2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기 동

○ 본 동의안은

-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석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 23.8월 기준 철거율은 주택 43.6%, 비주택(축사, 창고) 17.3%로 현저히 낮은 실정이므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지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3년 1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슬레이트 해체 등을 직접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위탁사업자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위탁운영 건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